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보건행정과]

제 안 설 명 서

설명자: 보건행정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 되어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6. 1일부터 6.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6.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093
----------	----------

제출년월일: 2023. 7. 7.
제출자: 달서구청장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 「지역보건법」 제34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6. 1. ~ 6. 2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해당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붙임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500	1,000	2,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p> <p>2. 개별기준</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 반 사 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이 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별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td> <td>법 제34조 제1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법 제34조 제1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상	<신설>					가. 별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 반 사 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이 상</th> </tr> </thead> <tbody> <tr> <td>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500	1,000	2,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200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상																																														
<신설>																																																		
가. 별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500	1,000	2,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200																																														

【 관계 법령 】

□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붙임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07.04.05 조례 제737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11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3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제3조에서 이동(2018. 12. 31.)]

제3조

[중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8. 12. 31.)]

제4조 ~ 제8조 <삭제 2016. 12. 30.>

제9조

<삭제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2. 30.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12. 31.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